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강서 제5선거구 이광성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용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전·관리”를 “보전 및 관리”로 정비하고, 그 외 부정확한 용어,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

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